

# 한국콜마 사규(Kolmar Regulation)

이사회규정

개정일: 2026. 4. 2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한국콜마주식회사 이사회(이하 "이사회"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 (권한)

-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-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,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.

## 제2장 구성

### 제4조 (구성)

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(독립이사,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### 제5조 (의장)

-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로 한다.
- 이사회 의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인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서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앞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.

## 제3장 회의

### 제6조 (종류)

-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정기이사회는 연 6회 개최하며, 이사회 의장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-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 한국콜마 사규(Kolmar Regulation)

## 이사회규정

개정일: 2026. 4. 2

### 제7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 소집권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8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회의 1주일 전일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### 제9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 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.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 제10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1.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
 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3. 신주의 발행
  4.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
  5. 사채의 발행
  6.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
  7. 정관의 변경
  8. 합병, 분할합병의 승인
  9. 중요한 투자에 관한 사항 (건당 200억원 이상)
  10. 중요한 차입, 보증 및 담보제공 (건당 100억원 이상)
  11. 기타 정관이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
  12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 한국콜마 사규(Kolmar Regulation)

## 이사회규정

개정일: 2026. 4. 2

-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  2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### 제11조 (감사의 출석)

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### 제12조 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 제13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14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### 제15조 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이사회 주관부서 팀장이 간사가 되며,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## 제4장 기타

### 제16조 (감사의 권한 보장)

감사는 모든 경영상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. 감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이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감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## 한국콜마 사규(Kolmar Regulation)

이사회규정

개정일: 2026. 4. 2

제17조 (독립이사에 대한 지원)

독립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·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원한다.

제18조 (개정)

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 단, 이사회내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한 시점부터 적용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